

보도시점 2025.4.2.(수) 배포시 배포 2024.4.2. 금융위 종료시

#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은 종료('25.4.16일)하되,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10.17일) 후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금융 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그간의 법 집행상황을 점검·논의
  -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하였던 6개월의 계도 기간을 종료하기로 결정('25.4.16일 종료 예정)
- ◈ 금융위원회는 앞으로도 새로운 제도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현장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하는 등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o 아울러,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 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

'25.4.2일(수) 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정례회의에서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상황에 대해 논의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 이후의 全과정 (연체-추심-양도)에 걸친 개인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24.1월 제정된 이후 지난 '24.10.17일 시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추진실적,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 쟁점에 대한 검토,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연장 여부 등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약 5개월 간의 제도 운영 현황\*을 점검한 결과, 채무조정요청권 등 새로운 제도들이 아직 시행 초기 이나, **금융현장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예시) 총 2.5만건(신청 3.2만건)의 채무조정을 실시('25.1월말 기준)하였으며, 채무조정 유형(중복 허용, 총 4.6만건)은 원리금 감면이 1만4,412건(31.1%)으로 가장 많았고, 변제기간 연장(1만2,700건, 27.4%), 분할변제(8,682건, 18.7%) 順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그간 2차례에 걸쳐 부여했던 6개월\*간의 계도 기간('24.10.17~'25.4.16)을 당초 일정에 따라 '25.4.16일 종료하기로 결정하였다.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등을 통해 점검한 결과, 대부분의 법률 적용대상 금융회사 등이 「개인채무자보호법」시행에 따른 준비를 갖추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유사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도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였음을 고려하였다.

\* 금융위 보고를 거쳐 2차례에 걸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음 ('24.10.17일~'**25.4.16일**)

금융위원회는 향후에도 법 집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가운데, 「개인채무자보호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비대면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은행권의 비대면 모바일 앱 구축을 지속 독려하는 가운데, 취약층 특성을 감안한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여 몰라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청년층) 카카오페이 등 모바일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사회취약계층)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안내장 등 배포 (연체우려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홍보

또한, 금융위원회는 향후 **금융감독원 검사**시 「개인채무자보호법」준수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김광일 (02-2100-2610)
(총괄)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이소민 (02-2100-2612)
(총괄)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은행감독국	담당자	팀 장	송명준 (02-3145-803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송경용 (02-3145-8410)
	서민금융보호국	담당자	팀 장	신동호 (02-3145-8412)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곽범준 (02-3145-6770)
	중소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조수경 (02-3145-6775)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상만 (02-3145-7550)
	여신금융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진형 (02-3145-744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임권순 (02-3145-7580)
	자본시장감독국	담당자	팀 장	김용진 (02-3145-7590)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노영후 (02-3145-7460)
	보험감독국	담당자	팀 장	황기현 (02-3145-7450)



대한민국 지체보리피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 참 고

### 개인채무자보호법 주요내용

#### 1. 추진배경

- □ 연체 이후의 과정에서(연체-추심-양도) 채무자 보호체계 마련
  - 현행 **연체 채무 관리체계는 부실 발생 후** 공공부문(신복위·법원)에 의한 **채무조정**(사후적 구제) 중심으로,
  - 선제적으로 부실을 예방하여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연체 후 금융회사와 개인채무자간 권리·의무의 균형 필요
-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24.10월 시행('25.4.1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중)

## 2. 법률 주요내용

- □ **연체채권 채무조정, 추심** 등 채무자-채권자 간 권리의무 규율
  - 1 (채무조정 요청권) 채무상환이 어려운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 요청 가능(3천만원 미만 대출)
  - ② (연체부담 경감) 기한이익 상실시 기존 약정에 따른 기한이 도래 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연체이자 부과를 금지하고(5천만원 미만 대출),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 면제(3천만원 미만 대출)
  - ③ (추심제도 개선) 추심금지채권 명문화(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인 채권 등), 추심총량제 등\* 과도한 추심 제한
    - \* (추심총량제) 추심연락 횟수를 7일 7회 이하로 제한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특정 방식·시간대의 추심연락 금지를 요청 가능 (추심유예제) 채무자의 중대한 재난상황 등에 일정 기간 추심을 유예
  - 4 (채권매각 규율 강화) 채권 양도시 양도예정 통지, 양수인 평가 등 의무화, 양도금지채권 명문화
  - **⑤** (채무자보호 내부기준 마련)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 내부기준 등 5개 내부기준\* 마련 의무 부여
    - \* 채권양도내부기준, 채권추심내부기준, 채권추심위탁내부기준, 채무조정내부기준, 채권추심회사 및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의 이용자보호기준